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관련 804

제출년월일 : 2023년 7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23년 7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용어 정의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각급학교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2.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충분히 예상됨. 따라서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사료됨.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하나, **기왕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형성된 법질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폐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2021년 7월부터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 중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임기,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은 두고 있으면서도 제20조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생태전환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해 보임**

- 또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3학년도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안내하였고, 단위학교와 함께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생·교사·학부모 기후행동 365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연계 생태전환교육’ 등 2023학년도 생태전환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바,

- 현행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도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기왕의 생태전환교육 시책 수립·실시, 학교 교육활동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서울시의회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지 2년여 만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기본법」의 근거한 현행「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례 제정에 있어 정당성 및 법적합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법적 근거와 목적, 개념 등을 달리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이유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 및 법체계를 오해한 것으로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 기금운용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남용 내지 입법상의 자의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위원회가 유사·중복위원회 우려가 있다면 이는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함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치법령 운용이며, 자문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취지상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폐기될 경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함.

위와 같은 사유로 2023년 7월 6일자로 이송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2. 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붙임 1 관련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소

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경교육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29조(포상)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3. 국공립 교육시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34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918호, 2022. 6.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붙임 2 **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04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의원(53명)

1. 제안 이유

○ 2023. 3. 1.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 등으로 재정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유사·중복 조례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새로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각급학교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및 명예교사
   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교원 연수 등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
5.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6.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7.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평가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설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대체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모범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